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- 361호

김제, 울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추가 완공으로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
산업통상부장관

1. 마산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	
마산 자유 무역 지역	토지	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478	2026. 6.1. ~ 2026. 12.31.	
		o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	689		
	건물	o 청사	2,866		
		o 청사 별동	2,793		
		o 양봉119센터	1,498		
		o 표준1호 보일러실	1,215		
		o 표준2호 보일러실	1,206		
		o 지원사무동(나래관)	1,633		
		o 기숙사 C,D동	524		
		o 복지관	975		
		o 보건센터 2개동	1,440		
		o 혁신지원센터	2,997		
		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			
		- 표준공장(1호동)			749 (옥상층 64)
		- 표준공장(2호동)			683 (옥상층 58)
		- 표준공장(3호동)			785 (옥상층 79)
		- 표준공장(4호동)			715 (옥상층 52)
		- 표준공장(5호동)			607 (옥상층 52)
		- 표준공장(6호동)			654 (옥상층 51)
		- 표준공장(7호동)			658 (옥상층 53)
		- 표준공장(8호동)			743 (옥상층 57)
	- 표준공장(9호동)		739 (옥상층 57)		

2. 군산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2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
군산 자유 무역 지역	토지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90	2026. 6.1. ~ 2026. 12.31.
	건물	○ 청사동	1,897	
		○ 업무지원동	1,802	
	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		
		- 표준공장A형(1동)	478	
		- 표준공장A형(2~5동)	462	
		- 표준공장B형(6~7동)	566	
		- 표준공장C형(8동)	515 (옥상층 76)	

3. 대불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
대불 자유 무역 지역	토지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84	2026. 6.1. ~ 2026. 12.31.
	건물	○ 청사동	995 (옥상층 8)	
		○ 업무지원동	1,227 (옥상층 17)	
	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		
		- 표준공장(A동)	543 (옥상층 10)	
		- 표준공장(B동)	516 (옥상층 8)	
		- 표준공장(C동)	516 (옥상층 8)	
		- 표준공장(D동)	511 (옥상층 10)	
		- 표준공장(E동)	588 (옥상층 14)	
		- 표준공장(F동)	588 (옥상층 14)	
		- 표준공장(G동)	663 (옥상층 30)	

4. 동해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
동해 자유 무역 지역	토지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63	2026. 6.1. ~ 2026. 12.31.
	건물	○ 청사동	1,853	
		○ 종업원기숙사	538	
	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		
		- 표준공장(1동)	419	
		- 표준공장(2동)	361	
		- 표준공장(3동)	350 (옥상층 63)	
		- 표준공장(4동)	649	

5. 울산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
울산 자유 무역 지역	토지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125	2026. 6.1. ~ 2026. 12.31.
	건물	○ 청사동	2,905	
		○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(A동)	674 (옥상층 5)	

6. 울산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
울산 자유 무역 지역	토지	○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233	2026. 6.1. ~ 2026. 12.31.
		○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124	
	건물	○ 청사동(지하~5층)	1,862	
		○ 청사동 옥상(신재생에너지업체 사용)	20	
		○ 청사동 옥상(통신업체 사용)	50	
		○ 중공업1동(1층~3층)	660	
		○ 중공업1동 옥상(신재생에너지업체 사용)	23	
		○ 중공업1동 옥상(통신업체 사용)	58	
		○ 중공업2동(1층~4층)*	910	
		○ 중공업2동 옥상(신재생에너지업체 사용)*	12	

		o 중공업2동 옥상(통신업체 사용)*	30	
		o 경공업동(1층~4층)	496	
		o 경공업동 옥상(신재생에너지업체 사용)	13	
		o 경공업동 옥상(통신업체 사용)	32	

7. 김제자유무역지역

지역	재산별	용도별	m ² 당 월 임대가격(원)	적용 기간	
김제 자유 무역 지역	토지	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	72	2026. 6.1. ~ 2026. 12.31.	
	건물	o 관리원 청사동	(1~2층) 2,327		
			(식 당) 2,297		
		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			
		- 표준공장 A동	437 (옥상층 17)		
		- 표준공장 B동	437 (옥상층 17)		
		- 표준공장 C동	478 (옥상층 23)		
		- 표준공장 D동*	593 (옥상층 8)		
		- 표준공장 E동*	562 (옥상층 8)		

* 신규 표준공장

8. 자유무역지역 공통

구분	재산	적용조건 및 내용			적용기간
감면대상	토지 및 건물	○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-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 (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)			2026. 6.1. ~ 2026. 12.31.
		공통조건 : 외투비율 30%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	1.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	75% 감면	
			2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	75% 감면	
			3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	90% 감면	
			4. 부품·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	100% 무상	
			5.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	100% 무상	
			6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	100% 무상	
		공통조건 :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	1.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	75% 감면	
			2.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,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	75% 감면	
			3.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,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	90% 감면	
			4. 첨단산업,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	100% 무상	
			5.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,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	100% 무상	

	○ '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-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: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-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: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%p씩 가산하여 최대 5%까지 적용 * 토지 임대료(㎡당) 산정방법 : 공고당시 ㎡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* 건물등 임대료(㎡당) 산정방법 : 공고당시 ㎡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<적용 例>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(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%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) *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: 2% (1% x 2) * 2년차 : 3% (2%+1%) * 3년차 : 4% (3%+1%) * 4년차 : 5% (4%+1%) * 5년차 이후 : 5% ○ 다만,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,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.	
--	--	--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공고는 2026. 6. 1.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- 가. 2026. 6. 1.부터 2026. 12. 31.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.
 - 나.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기간(10년)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.
 - 다. 이 공고 시행 전에 입주한 신규 표준공장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계약월을 기준으로 본 공고 임대금을 부과한다.
3. (폐지공고)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846호(2024.12.30.)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